

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30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1998. 9. 29.

발 의 자 : 의회운영위원회
위 원 장

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50조 · 제78조 및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- 위원회구성 및 총수
 - 위원수 : 5명
 - 구 성 : 부의장 1명, 각 상임위원회 1명 (운영위원회 제외)
- 존속기간 : 의결일로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.
- 위원선임 : 위원선임은 의장에 위임.